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성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55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6.

찬성자 : 이성권 · 신성범 · 이현승
조승환 · 김용태 · 고동진
안철수 · 이만희 · 강명구
백종헌 · 정연욱 · 조은희
최보윤 · 이인선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면서 빈집 주변의 슬럼화,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빈집의 정비·관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나 빈집 소유자의 책무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빈집 관리를 체계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한편 도시지역 내 경사지에 지어진 빈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빈발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경사지 빈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빈집의 정비·관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와 빈집 소유자 등의 책무를 신설하고,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

등급을 정하는 경우 위해성 기준에 대지의 경사도에 따른 위험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조의2 등).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제1절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의 정비·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빈집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(이하 “소유자등”이라 한다)은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빈집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정비하여야 한다.

제5조제4항 중 “위해성 등”을 “위해성(대지의 경사도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을 포함한다) 등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본문 중 “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(이하 “소유자등”이라 한다)에게”를 “소유자등에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의 정비·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 <u>② 빈집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(이하 “소유자등”이라 한다)은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빈집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정비하여야 한다.</u>
제5조(빈집등 실태조사) ① ~ ③ (생략) ④ 시장·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빈집의 상태 및 <u>위해성</u>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. ⑤ (생략)	제5조(빈집등 실태조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<u>위해성(대지의 경사도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을 포함한다)</u> 등----- ----- -----. ⑤ (현행과 같음)
제6조(빈집등에의 출입) ① (생략) ② 시장·군수등 또는 제5조제	제6조(빈집등에의 출입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

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하는 날 7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(이하 “소유자등”이라 한다)에게</u>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. 다만, 소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소유자등에</u> <u>게</u>----- ---. ----- ----- ----- ---. ③ (현행과 같음)
--	--